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89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조지연 · 박성민 · 박준태
박충권 · 이만희 · 김은혜
임이자 · 김재섭 · 박덕흠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대외적 부담을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반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5(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동차가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 전기자동차: 100분의 15
2. 태양광자동차 : 100분의 15
3. 하이브리드자동차: 100분의 15
4. 수소전기자동차: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2.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3.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동차 생산 수량의 산정,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없거나”를 “없거나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한도액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

조의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0조의35(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① 내국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동차가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u> <u>1. 전기자동차: 100분의 15</u> <u>2. 태양광자동차: 100분의 15</u>

3. 하이브리드자동차: 100분의 15

4. 수소전기자동차: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2.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3.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동차 생산 수량의 산정,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략)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⑤ (생략)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⑧ (생략)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⑪ (생략)

<신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030년 12월 31일-----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2030년 12월 31일-----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2030년 12월 31일-----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① -----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없거나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한도액 또는-----

[illegible]

②

제99조

의12, 제100조의35

